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교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등 >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75호)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76호)

2025. 2.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목 차

Ⅰ. 개요 ····· 1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

Ⅱ. 검토의견 ····· 4

□ 교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등 ····· 4

Ⅰ. 개요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12. 26.
3. 회부연월일: 2024. 12. 2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 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제1항12호 및 제45조제1항11호 개정).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성국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2024. 12. 26.

3. 회부연월일: 2024. 12. 27.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원은 지식 전달과 학생 생활지도라는 업무의 특성상 높은 전문성과 자기 개발이 요구됨. 이에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을 위하여 자율연수휴직제도가 도입되었음.

한편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는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평생 1회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일반직공무원은 재직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 6년마다 사용할 수 있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함.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직무의 동질성이 있고, 복무 등에 관해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교원의 보호와 교육의 질 유지를 위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요건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재직기간 3년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하고, 복직

후 6년이상 근무시 다시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과 일반직공무원간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9조).

Ⅲ. 검토의견

□ 교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 완화 등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휴직[1] 요건을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완화하고,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면 다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 및 재휴직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교원과 다른 공무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44조제1항12호,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제1항제11호, 사립학교법 개정안 제59조제1항제12호 및 제59조제4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	제44조(휴직) ① ---------- ---------- ---------- ----------. ---------- ---------- ----------

1) 교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의 명칭으로 '자율연수휴직'이 사용되고 있으나, 해당 용어가 법령에 규정된 것은 아님.
한편,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은 이와 유사한 휴직을 '자기개발휴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서도 해당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검토보고서에서는 교원의 자기개발을 위한 휴직을 '자기개발휴직'으로 지칭함.

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0. (생 략) 11. 제44조제1항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②·③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12. ----------3년--------- ---------- ②~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2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5조(휴직기간 등) ① ----------. 1. ~ 10. (현행과 같음) 11.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2. ----------3년----------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제12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 후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여야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교원은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휴직은 2016년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음.

자기개발휴직과 관련하여 두 법률은 모두 휴직 가능 요건을 10년 이상 재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은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법」은 해당 사항을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2)]

한편, 「국가공무원법」에서 자기개발휴직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되는 경우 가능하며,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2016년부터 도입되었음.

2) 최근 4년간(2021~2024년) 자기개발휴직 교원 통계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휴직 비중이 국·공립학교 교원 보다 낮게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사립학교의 재휴직 요건도 국·공립학교와 유사하게 재직기간 중 1회 수준일 것으로 보임.

[자기개발휴직 교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국·공립	전체휴직(A)	24,989	27,950	26,329	26,124
	자기개발휴직(B)	1,812	2,164	2,152	1,799
	자기개발휴직 비중(B/A)	7.3	7.7	8.2	6.9
사립	전체휴직(C)	1,837	2,172	2,086	2,034
	자기개발휴직(D)	100	119	117	98
	자기개발휴직 비중(D/C)	5.4	5.5	5.6	4.8

주: 1.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원 기준
2. 각 연도별 인원의 조사기준은 휴직시작일이 전년도 4월 2일부터 해당연도 4월 1일인 교원임
자료: 교육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공무원법」은 휴직 사유와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휴직 요건과 재휴직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최초 도입 당시에는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한 경우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고,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면 다시 동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2024년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공직 사회의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정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휴직이 가능하고,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면 다시 휴직할 수 있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음.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교원에 대한 자기개발휴직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비해 사용 요건 등이 보다 제한적임.

[표 1] 현행 자기개발휴직 요건 등 비교

구분	국가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원	사립학교 교원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제2항제7호, 제72조(휴직 기간)제10호 •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제1항제12호, 제45조(휴직기간 등)제1항제11호	•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제1항제12호, 제59조제4항
휴직 사유	•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	•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	•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연구 등
휴직 가능 요건	• 재직기간 **3년** 이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 재직기간 **10년** 이상
재휴직 가능 여부	•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하면 가능**	•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	• 정관 등으로 정함
휴직 기간	• 1년 이내	• 1년 이내	• 정관 등으로 정함
비고	**• 제도 신설** –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3618호), 2015.12.24. 개정, 2016.6.25. 시행 – 「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27256호), 2016.6.24. 개정, 2016.6.25. 시행 **• 휴직 가능 요건 완화 등** – 「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제34608호), 2024.6.27. 개정, 공포일 시행 * 휴직 가능 요건 : 재직기간 5년 이상 → 3년 이상 * 재휴직 가능 요건 :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 → 6년 이상 근무	**• 제도 신설** –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3819호), 2016.1.27. 개정, 공포일 시행	**• 제도 신설** – 「사립학교법」 (법률 제14468호), 2016.12.27. 개정, 공포일 시행

자료: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공무원 임용령」 중 해당 조항 정리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며,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으로 분류되어[3]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지만,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한 특례는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됨.[4]

이에 따라 자기개발휴직에 관한 사항도 「교육공무원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데, 제도 도입 당시 휴직과 재휴직 요건을 「국가공무원법」의 요건 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한 것에는, 학교 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최근 교육활동 침해행위 증가[5] 등으로 교원의 심신회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 교육활동을 위한 지속적 자기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

3)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4) 「교육공무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교육활동 침해행위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1학기
교육활동 침해 건수	1,197	2,269	3,035	5,050	2,358

주: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 기준
자료: 교육부

이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과 재휴직 요건을 「국가공무원법」의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국·공립학교 교원과 다른 공무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함께 공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자격요건, 복무, 신분보장,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6] 「사립학교법」의 자기개발휴직 요건과 재휴직 요건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 국·공립학교 교원, 다른 공무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라 교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을 다른 공무원의 자기개발휴직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교원과 다른 공무원 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교원이 필요한 시기에 자기개발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여, 교원으로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6)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헌법재판소, 2016헌바144, 2016.12.29.),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95헌바29, 1997.12.24.),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헌법재판소, 2005헌가7, 2006.2.23.)

다만, 자기개발휴직 사용 기회 확대로 휴직 인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동 제도를 운영하면서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원 인력 운영 관리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재휴직 요건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은 육아휴직 및 입양휴직 이외의 휴직에 대해서는 기간 등을 정관 등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휴직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사립학교 교원의 재휴직 보장과 임용권자의 재량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 등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개정안 관련 교육부 등 의견]

공통
○ **교육부: 이견없음** -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자율연수휴직 요건을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복직 후 6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자율연수휴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자는 개정 취지에 공감함. - 다만, 시도별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수급 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교원과 일반공무원 간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 및 교원의 전문신장,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율연수휴직(자기개발휴직)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나, 교원 수급 상황 및 국가적 시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 시기 및 운영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도입시기) 현재 교원 수급 상황은 지역별 편차가 심하며, 특히 일부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교원 배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비롯한 국가적 시책 및 지역별 교육현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교원 배치가 필수적임. 자율연수휴직 확대는 이러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휴직 주기의 적정성) 3년 근무 후 1년 자율연수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기존 교원의 안정적 근무 주기에 비해 지나치게 짧은 주기로 판단됨. 특히 복직 후 6년 근무 후 다시 휴직할 수 있는 구조는 교원의 경력 발전 및 연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학생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학교 조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검토가 필요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도교육청: 신중검토 -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자율연수휴직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동의함. - 다만, 자율연수휴직과 관련한 법률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함.
○ 충청남도교육청: 이견없음 - 법안 내용을 모두 수용함.
○ 사단법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신중검토 - 사립학교 교원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자율연수휴직제의 휴직요건을 완화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기본 취지는 바람직함. - 다만, 휴직요건을 개정안과 같이 '재직기간 10년→3년', '평생 1회→매 6년마다 사용'으로 대폭 완화할 경우 자율연수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크게 늘어 다수의 교사가 동시에 휴직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휴직교사 대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문 의 처
02)6788-5189